

국민체육진흥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“도핑”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, “치료목적사용면책”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아동학대관련범죄·장애인학대관련범죄·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의5제4호)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·보존·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·관리 사업을 추가함(안 제13조의3 및 제22조 제1항제10호의2 신설)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의2).

II. 검토의견

1.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관련(안 제34조의2)

안 제34조의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경찰청장은 지체없이 범죄경력 결과를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범죄경력조회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민감정보¹⁾로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조회 및 이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체육회 등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, 범죄경력조회 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

1)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민감정보”라 한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.

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(민감정보의 범위)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.

2.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

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34조의2(체육단체 임원의 <u>범죄경력 조회</u>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(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<u>범죄경력조회</u> 를 말한다)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그 <u>범죄경력</u> 을 회보하여야 한다.	34조의2(체육단체 임원의 <u>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(------ ----- <u>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</u> ----- -----) ----- <u>결과</u> 를 회보하여야 한다.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③ 제1항에 따른 <u>범죄경력조회</u> 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